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총무과 소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출장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구조문대비표

<별표 1>

권한위임사무

현행				개정			
분야별	일련 번호	사무명	근거 법령	분야별	일련 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총무과	1	(생략) <u>(신설)</u>		총무과	1	(현행과같음)	
					<u>2</u>	<u>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</u>	지방공무 원법 제6 조제2항